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 1. 17. 공포, 2018. 1. 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물의 적하(積下)”를 “화물의 적하(積荷)”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을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 제30조 본문) 중 “법 제3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을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출입구, 통로(계단 및 승강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1.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에 대한 중정비를 수행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차량정비기지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을 말한다.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널선
3.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고속철도 구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제31조 본문 중 “철도운영자는”을 “철도운영자등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를 “운전업무종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철도운영자가”를 “철도운영자등이”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철도운영자는”을 “철도운영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철도운영자”를 “철도운영자등”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

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항 중 “철도보호지구”를 “철도보호지구 등의”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수리와”를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으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1의2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격별 경력점수

국가기술자격 구분	점수
기술사 및 기능장	10점/년
기사	8점/년
산업기사	7점/년
기능사	6점/년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3점/년

별표 1의2제2호나목의 학력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력점수

학력 구분	점 수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 외의 학과
석사 이상	25점	10점
학사	20점	9점
전문학사(3년제)	15점	8점
전문학사(2년제)	10점	7점
고등학교 졸업	5점	

별표 6 제2호커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처목을 커목으로 하며, 같은 표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10의2호	125	250	5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발급되거나 신청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등급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u>화물의 적하(積荷)</u> , ----- ----- ----- ----- -----. 2. (현행과 같음)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 법 제3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를 말한다. <u><신 설></u>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 ----- ----- -----.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출입구, 통로(계단 및 승강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u><신 설></u>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 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1.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에 대한 중정비를 수행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차량정비기지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을 말한다.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널선
3.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고속철도 구간에 설치된 길이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 12. (생략)

<신 설>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 운전업무종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

1. ~ 3. (현행과 같음)
4. ----- 철도운영자등이 -----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

1. ~ 4. (현행과 같음)
5. 철도운영자등-----

6. ~ 12.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	<u>행위</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u>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u> 2. 「<u>건설기계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u>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u> 3. 「<u>위험물안전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u>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u>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u>법 제45조제1항</u>”은 “<u>법 제45조제2항</u>”으로, “<u>철도보호지구</u>”는 “<u>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u>”으로 본다.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u>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u> 2. (생략) ② (생략)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u>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u>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u>철도보호지구</u>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한국철도시설공단법</u>」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u>수리</u>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 ----- < <u>삭 제</u>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 ----- ----- < <u>삭 제</u>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철도보호지구 등의</u> ----- ----- ----- ----- 1. ----- <u>수리</u>,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
--	--	--	--	---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u>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u> <u>행위의 신고 수리 및</u> <u>제3항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603